

원로과학기술자가 걸어온 한평생

石泉 金 東 一 빠

5

학술원 회원직 46년 ... 5共 칼질에 試鍊

나는 학술원과 여러모로 인연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 학술원이 정식 개원된 것은 1954년 7월 17일이었다. 나는 개원 당시 초대회원이 된 이래 오늘날까지 회원직에 계속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술원의 탄생은 여러모로 의의가 깊다. 기이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대학국가가 된 것이나 학술원과 예술원 설치가 논의된 것이 부산 피난시절이었다는 것이다. 피난중에 권력은 물론 재력과 관계없는 문화인을 우대하겠다는 빌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문화사적인 면에서 도 대단한 뜻을 지닌다 하겠다.

당시 국회문교사회위원회인 이재학(李在學) 의원이 이항녕(李恒寧)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문화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기초를 의뢰해서 성안된 것이 문화보호법이었다. 문화인을 우대하려면 먼저 문화인을 우대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는 국내·외의 아카데미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레

서 고려시대의 승문관(崇文館), 조선시대의 집현전(集賢殿)·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규장각(奎章閣)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한림원(翰林院)·영국의 로열과학아카데미·스웨덴의 왕실아카데미와 과학아카데미·일본의 학사원(學士院) 등에 관련된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학술원을 발족시킨 것이다.

54년 7월에 학술원 개원

학술원 창립을 준비하기 위해 1952년 10월 문교부는 최규남(崔奎南)·이병도(李丙燭) 등 8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고 문화인 등록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인 이란 과학자와 예술가를 통칭하는 말이다. 문화인 등록령이 53년 4월 14일 대통령령(令)으로 공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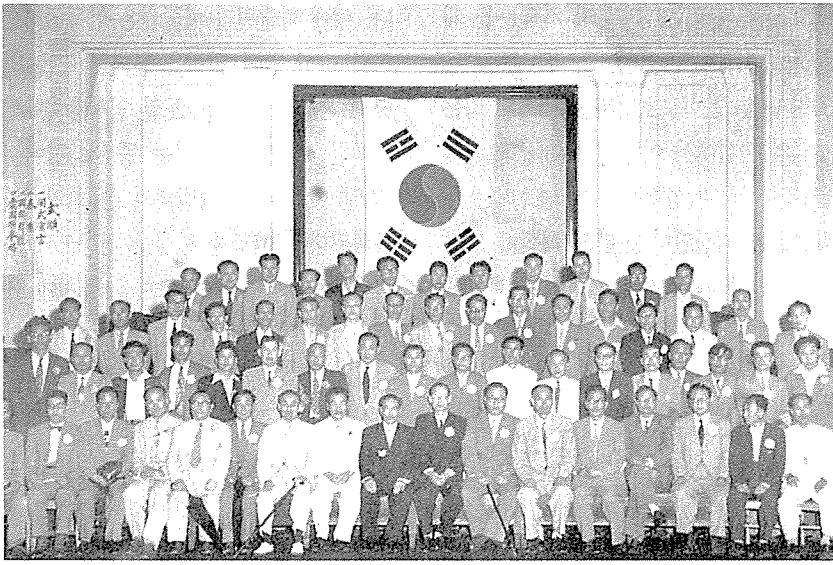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말까지 인문계 3백12명과 자연계 4백28명이 문화인 등록신청을 했고 자격심사를 거쳐 인문계 3백12명, 자연계 3백58명이 유자격자로

인정되었다.

이어 54년 1월 23일 학술원과 예술원 회원 선거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는 각각 5개로 분류됐고 54년 3월 25일 전국적인 회원선거를 통해 각각 25명씩 총 50명의 학술원 초대회원이 선출되었다. 나는 이 때 초대회원이 되었다.

학술원과 예술원을 설치함에 있어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첫번째는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원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했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한낱 어용기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가 학술원과 예술원은 국립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학술원의 빼내가 서자 다음으로 문제 가된 것은 회원 선출방법이었다. 원칙으로 말하자면 회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종신제로 하여야 되겠지만 회원을 대통



▲ 1954년 7월 17일 학술원개원 기념식 때 포즈를 취한 김동일박사(맨위 우로부터 네번째)

령이 임명한다면 학술원과 예술원이 관제적인 냄새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하자니 그것이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회원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우선 선거로 임기 3년의 회원을 뽑고 당선된 회원이 다시 임기 6년의 회원을 추천하고 그 선거회원과 추천회원으로 우선 학술원을 구성하고 그 학술원이 종신회원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학술원 회원은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에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예술원의 회원은 40명 이내로 하였다. 그리고 문화보호법에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규정을 두기로 했다. 선거권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 지났거나 학술연구와 예술경력 10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문화보호법안은 52년 6월 6일 제12회 정기국회 제72차 회의에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안으로 상정되었고 같은 해 7월 21일 제13회 임시국회 제

11차 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그해 8월 7일 공포되었다. 제5조 및 제14조에 의거한 문화보호법 조항중 학술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5共 國保委서 어용화 시도

『학문의 향상 발전과 과학자의 예우를 위하여 학술원을 설치하여 국내외에 대한 대표기관으로서 과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학술원의 회원 수는 선거에 의한 일반회원 50명, 추천회원 20명 이내, 임명회원 10명 이내, 도합 80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일반회원)으로 한다.

과학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나 또는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술원에는 인문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둔다』는 것이었다.(1994년에 펴낸 「학술원 40년사」 참조)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의 연구경력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금의 안목에서 보면 이상

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건국 후 만 4년이 되지 못한 당시 상황으로서는 부득이 한 규정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몇차례 개정됐다. 62년 제3공화국은 학술원의 존폐문제까지 논의한 바 있지만 학술원의 전의를 받아들여 별일 없이 지냈다.

학술원은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큰 난관에 봉착했다. 80년 9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치·경제·언론계에 이어 학술원에까지 찬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 이었다. 그때 나는 학술원 자연과학부장으로 있던 때였다. 제5공화국은 군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소위 「입법회의」란 비민주적 입법기구를 만들어 무참하게도 문화보호법에 칼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당시 서슬이 시퍼렇던 국보위(國保委)가 비밀리에 입안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술원 당국은 그 법안이 81년 3월 12일 입법회의 문교공보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국보위에서 마련한 안은 학술원을 어용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학술원 운영에 문교부장관의 영향력을 높여 학술원 고유의 자율권을 크게 제한했다. 준회원제와 정회원의 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회원의 상징성과 권위를 격하시켰다.

이같은 소식에 접한 학술원 회원은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수립에 나섰다. 대한민국 예술원도 같은 처지여서 학술원과 연대해서 우선 공동으로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기관과 관계요로에 배포하여 사회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입법회의 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성명서는 『입법회의 문공위원회에서 의결된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은 학·예술원의 조직과 회원을 해체하고 새로 명예회원·정회원 등 3종을 두

되 의결권과 임원피선권이 없도록 개정한 명예회원만은 종전대로 종신제로 하고 기타 회원은 70세 정년제로 하였으며 또 준회원의 정원을 학술원은 5백명, 예술원은 1백50명으로 하는 등 상상 밖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애초에 문화보호법을 제정할 때 여러 선진국 제도를 종합참작하여 공헌과 업적이 뚜렷한 학·예술원의 원로에 대한 우대기관으로 신중하게 법을 만든 것인데 이를 일조에 휴지화시킨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겠으며 이 개정안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성명서는 3월 14일 각 언론기관에 배포되었고 입법회의 당국에도 발송되었다.

학술원과 예술원 회장단과 임원 그리고 회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각자가 손이 닿는대로 시내 각 언론기관·입법회의·청와대 비서실 등을 방문하여 본건 처리에 대한 각별한 선처를 요망하였다.

입법회의는 80년 말 군사정권인 제5공화국이 발족할 때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운영에 불가피한 입법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과도(過渡)·한시(限時)적인 것이었는데 그 기한이 다가올 때까지도 입법회의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3월 28일 학·예술 양원은 합동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그간의 개정입법안 심의에 대한 입법회의의 동향과 사회여론에 관한 경과보고와 아울러 그 대책을 협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양원은 『①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회원정년제를 골자로 한 문화보호법에 반대한다 ②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금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 법안이 과도 입법기관인 입법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③만일 이 법안이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비장한 결심을 행동

으로 옮긴다』라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공포했다. 동아일보는 3월 30일자에 「문화보호법과 입법회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학·예술원의 구성과 성격을 바꿔 놓으려는 문화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문공위만 통과시킨 채 그 처리를 보유했던 입법회의가 이 개정안을 3월 31일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보호법 개정에 사퇴 소동

우리는 입법회의가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학·예술원의 구성을 원로회원 및 정회원 외에 준회원 5백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학·예술원을 학회나 학술회의 또는 또하나의 정책자문회의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원로로 예우하면서 두 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은 밝힌 바 있다. 또 이런 문제는 시일을 두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순리라는 것과 이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할 긴박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리를 새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국가의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임이 원칙이다. 입법회의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국정운영에 불가피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비상시의 기구로서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3.25 국회의 원 선거가 끝남으로써 이제 과도체제는 지나갔다고 생각된다. 불요불급한 입법은 새 국회의 개원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여론과 양원 회원들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 입법회의는 이 개정된 문화보호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

다. 이에 학술원과 예술원은 합동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대책을 협의한 결과 열띤 토론을 거쳐 3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결의문 중 제3항에서 『만일 이 법안이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비장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다』하고 되어 있는 조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양원 회원을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회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 날 한국일보는 「학·예술원 87명 사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학술원이 참석회원 61명 중 54명, 예술원이 참석회원 38명 중 33명이 사퇴서를 냈는데 양원을 합하면 총 참석자 99명 중 8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 사퇴서는 강제성이 없이 회원 각자의 자유의사대로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참석자의 88%에 달하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사퇴서를 냈던 것이다. 그 당시 양원의 재적회원 수는 학술원이 99명, 예술원이 50명이었다고 썼다.

또한 한국일보는 같은 날 「원로회원 사퇴까지 벤진 문화보호법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4월 2일 오후 열린 학·예술원 합동임시총회에서 개정된 문화입법에 반대하는 의미로 참석회원의 대다수가 양원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회원직을 물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썼다.

당시 言論들 不當性 계속 보도

동아일보는 4월 11일자 「학·예술원 어떻게 될까」란 주제의 기사에서 『새 문화보호법이 공포되고 학·예술원이 구성되어도 앞으로 운영이 순탄할 것 같지 않다. 현 회원 중 지난 2일 사퇴서를 제출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문화보호법의 재개정을 정부 당국과 새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추진할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3월 9일 오후 각각 모임을 가진 이병도회장을 비롯한 학술원 간부들과 김동리(金東里)회장대리를 비롯한 예술원 간부들은 보관된 사표처리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병도회장은 사표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며 법이 공포된 후 새로 원로회원이나 정회원으로 위촉될 경우 그 때 가서 회원 각자의 의견에 맡긴다는 것이고 김동리 회장대리도 비슷한 내용인데 회원의 대다수가 구성되는 예술원에 참가해 새 법을 다시 개정하는 데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견들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이 개정되어도 일거리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자 일부 학·예술원 강경파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관학(官學)·예술원'·'민학(民學)·예술원'으로 학계 원로들이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문교부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썼다.

81년 3월 31일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신문화보호법은 4월 13일 관보에서 법률 제3435호로 공표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학·예술원의 극심한 반대와 사회여론에 부딪쳐 당초 문공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원안중 준회원의 정원 1천명을 5백명으로, 정회원에 대한 65세 정년제를 70세로 완화하였고 명예회원의 명칭을 원로회원으로 고치는 등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며 또 경과 조치로써 구법에 의한 현 회원은 개정법의 회원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회원에 대한 정년제의 실시, 회원선출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관여, 준회원제 신설, 원로회원의 의결권 및 임원 피선거권 삭제, 양원의 자율성 및 위



▲ 학술원 현관 앞에서 선 김동일박사

상의 훼손(毀損) 등 양원이 반대하는 기본조항에 대하여는 원안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6共 들어와 惡法폐기

결국 이 개정된 법률은 88년 12월 제6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폐지됨과 동시에 양원은 각자 대한민국 학술원법 및 대한민국 예술원법의 독립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됨과 아울러 양원이 모두 창립당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되찾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필규정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건대 양원 회원들이 총사퇴서를 제출할 당시는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이 심엄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던 초창기이었다. 이런 시기에 위세가 대단하던 당시의 국보위원회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양원 회원들의 회원적 총사퇴라는 초강경적 행동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양원 회원들이 양원의 존엄한 창립정신과 자율성을 수호하려는 비장한 결심하에서 거행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학·예술원에서의 의거적(義舉的) 차원의 사건이라고 평가되어 양원 발전사

상 길이길이 빛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상은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학술원과 예술원의 양원 회원이 총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과정과 그 수습에 관한 경과를 대강 설명한 것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 나는 학술원 자연과학부장으로서 이 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70년 학술원 공로상 받아

1970년 나는 학술원상(公로상)을 받았으며 1974년 5월에는 터키의 앙카라(Ankara)와 이스탄불(Istanbul)에서 자리를 바꾸어가며 개최되었던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제15차 대회에 이민재(李敏載)회원과 함께 학술원 대표로 참석하였다. 또 1977년 7월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열렸던 태평양과학대회 제3차 중간대회에는 이태규(李泰圭), 전풍진(田豐鎮), 양박사와 함께 역시 학술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1994년 9월 16일 학술원 40주년 기념식에서 권이혁(權彝赫)회장으로부터 기념패를 받았다. ST